

제420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23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 | | |
|--|---|
| 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 2 |
| 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 2 |
|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 2 |
|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 2 |
|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 2 |
| 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 2 |
| 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 2 |
| 8.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7 |

(15시52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원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0)
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5)
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15시53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불법 군사 쿠데타가 다시 재현되어서 헌법 질서를 유린했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 방조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해서 윤석열 탄핵, 체포 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탄핵 등을 외치며 어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담겨 있는 거짓·허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의 거짓 논리 또 허위 이유 이런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연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지난주 토요일 전농이 대통령 구속하고 현 정권 퇴진을 위한 집회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30여 대를 끌고 와서 경찰과 한 30시간 동안 대치를 했고 결국 트랙터 13대가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을 하면서 주말에 이 일대가 많은 혼잡을 겪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이 지난 주말 집회의 모습이거든요.

주말 집회에 대동된 트랙터가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전농이 북송용으로 구매

한 트랙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 다 ‘대북제재 해제’ 문구가 쓰여 있거든요. 당시에 이 트랙터는 국민 성금으로 구매가 됐지만 대북제재로 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저도 이번 전국 사태의 혼란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송을 위해서 국민 성금으로 구매된 이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는지는 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림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오늘 안건을 계속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추가 말씀이 계시면 의사일정을 다 처리한 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원택 소위원회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원택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에 산림청 소관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 등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법안,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조경태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첫째, 법률의 제명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하고 그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산림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산림재난의 범주에 산불, 산사태·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포함하고 산사태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중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대상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 우려를 감안하여 그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셋째, 산림재난 대응 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합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넷째, 산림과 잇닿은 지역에서 산림재난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지자체 등이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사전 통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산림재난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산불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여섯째, 산불 예방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하한을 2년 이상에서 3년 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올해, 작년, 재작년에 산불과 산사태로 인해서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 왔습니다.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돼서 내년에 있을 산사태와 산불에 그다음에 산림병해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저는 법안에 대한 심사보다는 저희가 지난 19일이지요, 19일 날 농업 민생 4법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번째 대행 업무가 시작되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차관이 출석하셨으니 차관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어기구 아무래도 법안, 오늘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나중에 우리 현안질의는 별도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현안질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청장님,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올해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좀 도움은 되는지, 재선충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하고 또 재선충과 관련된 예산이 한 20% 정도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올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내년에 혹시나 재선충과 관련된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농민들과 시골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첫 번째 재선충 효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재선충 방제단이 있으십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이 계신데—현재는 그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그분들만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법이 통합이 되게 되면, 이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산불이나 산사태에 일을 하셨던 분들도 소나무재선충병까지 같이 통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과 공공기관, 단체가 다 합쳐짐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인력들의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좀 시급하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재선충 방제 예산이 정부안에서는 전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한 1008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 400억 정도가 좀 더

있었으면 여유 있게 방제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나름대로 재해대책비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색을 하고 있지만 조금 한 400억 정도, 3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있으면 내년에 효율적으로 방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추경이 있게 되면 400억 증액하도록 합시다.

다음 또 위원님 하실 분……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법안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통합 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다들 지난 21대 때도 노력을 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여러 가지 예산까지, 재정 분야까지 해서 의무를 전부 다 부여하고 있잖아요, 재정 확보를 하도록?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기재부, 어떻게 보면 재정 당국의 재량에 맡겨 주는 거고. 향후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어찌 됐든 투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소요가 많이 되는 소방헬기 같은, 소방장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당연히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왜냐하면 작년입니다? 산불 크게 났을 때 소방헬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눈 뜨고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산림청장 임상섭 산불 진화 헬기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렇지요, 산불 진화 헬기?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금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 노력을 산림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라, 그래서 지자체에 산불 진화 헬기들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재정이 좀 넉넉한 데는 구입할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이원택 위원 청장님, 사실 지금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복잡한 가운데서도 이 산림 재난방지법을 심사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산사태뿐만이 아니라 산불 또 산림재해가 심각하게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우리의 국토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빨리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는 1, 2월 대응 체계를 좀 속도감 있게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산불 대응도 하고 또 다가올 어떤 산사태 대응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산림청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도 하셨고

또 정희용 간사님, 이병진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걸 속도감 있게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그리고 법사위도, 저희들도 이 법안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도 저희들도 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25년에 있을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또는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당부말씀 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나중에 또 ‘뭐가 안 됐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자격 없는 겁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어기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법안심사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중요한 법이니까 열른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어기구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7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7항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상호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하고 산림 재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이원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산림재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8.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11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련한 법률안과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관계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안건은 다 처리가 됐고요.

다음은 위원님들 현안질의에 관련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전종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먼저……

○위원장 어기구 예, 그러면 정희용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현안질의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여야 간사 간에 현안질의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전종덕 위원 아니, 나가시지 마시라니까 가셔 버렸네.

○문금주 위원 기록에 남기니까.

○전종덕 위원 방금 전 박덕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도 다르고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트랙터, 우리 농민들이 일주일 전…… 일주일이 당연히 아니지요, 어제 있었던 상황이니까. 8일 전부터 동쪽과 서쪽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고 구속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죽 진행해서 서울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도 누구도 막지 않고 도로를 이용해서 계속 죽 오고 있었는데 서울 다 와 가지고 유일하게 남태령 구역에서 막힌 거예요. 누가 막았냐? 경찰이 막은 거예요, 경찰이 막았고.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농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 그리고 도로로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왔던 도로를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았던 것이 정부이자 경찰입니다.

오히려 헌법적 권리를 가로막고 농민들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30시간 가까이 농민들이 갇혀 있었어요.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음해이자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는 트랙터는 삼사 년 전 대북사업을 위해서 대북 통일 트랙터라고 명명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이 트랙터가 구매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긴장정책,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대북 사업이 중단되니까 그 트랙터들 계속 그렇게 묵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랙터를 갖고 통일의 의지도 담고……

어쨌든 우리 농업을 제대로 살리고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일농업 실현을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농민들의 주장이고 그 트랙터를 가지고, 농민들의 상징인 트랙터를 가지고 집회·시위를 하러 온 우리 농민들을 가로막았던 정부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이 내란정부가 그것을 항의하러 올라온 농민들한테 반정부 세력이라는 그

런 표현을 쓰신 것이 과연 적절한 표현이냐……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농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터는 시민모금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뜻을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한 것 자체가 이것은 음해이자 모략이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덕흠 위원님 이 발언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가셔서 유감이고요. 나가시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셨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기 때문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한 농민들과, 어쨌든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내란수괴범을 체포하고 구속하라는 우리 국민적 요구를 그렇게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한 것 자체가 이건 국민에 대한, 오히려 그것이 반국민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전혀 내용 파악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하시고.

우리 농림부에서도 지원한 내용 있어요? 알고 계신 것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요,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전종덕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대북 지원하려고 갔던 경우가 있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종덕 위원** 그런 목적으로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삼사 년 전입니다. 트랙터 구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지역에서 그 트랙터를 구입하자는 시민모금 활동에 참여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의, 내란수괴를 빨리 체포하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 앞에 그리고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고 농업 4법 거부권을 행사한 이 정부한테 항의하러 온 농민들한테 오히려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 박덕흠 위원님의 사과를 촉구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평화적인 집회였었고요. 또 농민의 구구절절한 생존권 싸움이었다 이렇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위원님 하시고.

○**임미애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12월 15일 자 쌀값이 얼마였어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8만 5552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18만 5550…… 그러면 저희가 12월 27일 자, 만약에 올해 쌀 가격이 정해진다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5일 자 쌀값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임미애 위원**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20만 원 올라갈 일은 없는데 어쨌거나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짐작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19만 원이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8만……

○임미애 위원 19만 원이 많이 안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 18만 5000~6000원, 많이 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는 어쨌거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회의에 농림부의 입장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걸로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지난주 남태령 농민들의 집회가 저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거부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 쌀값에 대한 것, 농업재해에 관한 것, 기후재난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뭔가 가지고서 거부권을 제안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농림부로부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농민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는 그동안 죽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은 그래도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농가의 수입이나 소득의 문제니까 직불금을 증액시키고 수입안정보험을 만들어서 농가의 수입이나 이걸 안정시키도록 하겠다, 재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올리고 보상 범위를 넓히고 재해보험도 품목을 늘리고 계속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죽 대안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기, 혹시 쌀 생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부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쌀 생산비가 지금 13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13만 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그것 언제 계산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임미애 위원 13만 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제가 몇 년, 지난 21대에 여기 상임위에서 제출이 되었던 쌀 가격, 생산비 내용을 보면요 15만 원이 넘어요. 1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16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선이었는데 12만 원, 13만 원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13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만약에 13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3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임미애 위원 쌀농사의 경우에 소득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뭐……

○**임미애 위원** 쌀농가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오로지 쌀전업농일 경우에 소득이 이 정도로는 보장이 되겠구나라고 내부에서는 그래도 통계자료는 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쌀농가의 면적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이모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직불금을 받는 것 이런 걸 다 따지니까 전체 농가 소득으로 보면 논벼농가들 같은 경우에 아마 소득이 다른 농가보다 좀 낮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직불금을 받고 농외소득 이렇게 이렇게 하면 농가 평균으로 따지면 소득이 한 5000만 원 조금 더 되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농외소득의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임미애 위원** 물론 이후에 직불제와 관련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라는 논리 하나로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도록 건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농정당국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요, 저희가 시장경제에다가 맡기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경제에만 맡기게 되면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영농을 계속할 수가 없고 힘들어지니 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가에 대한 지원대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농가에 대한 지원이 지금 직불제로, 직불금으로 해서 그것을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거나 내지는 보전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농가소득을 보면 농가구당 평균 소득이 한 5000만 원 되는데 농업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고……

○**임미애 위원** 그 이후에요 또다시 농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거부만이 능사가 아닌데 농림부, 농정 당국은 이걸 거부만 하면 모든 게 다, 일단 손을 터는 것처럼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위원님 저희도……

○**임미애 위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인지 저희가 그 의지를 확인할 바가 없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위원장 어기구**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손을 막 들고 계시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양곡법 해 주신 대로 남았을 때 정부가 사도록 하고 또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쌀 시장가격은 계속

해서 더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팔리고 난 다음에 쌀값은 또 시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또 대신에 정부가 그러면 계속해서 메꿔 줘야 되는데 재정의 한계는 있고 또 WTO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보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그러면요 차관님, 저희 직불제 5개년 계획 심의할 때 거부권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지금 양곡관리법만 거부된 게 아니잖아요? 재해와 관련된 대책법, 보험법 그다음에 농안법까지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후에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보완하겠다라는 계획을 심의할 때 좀 들고 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큰 방향을 아마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재의요구가 국회로 제출이 됐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하자,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그 취지가 있으니 그걸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여야정 협의체가 좀 빨리 만들어져서 같이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임미애 위원** 여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셔야 되겠네.

○**위원장 어기구**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원택 간사님 하시고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일단 5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까 트랙터 관련해서는 총 한 50여 대 정도 트랙터가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20대가 통일트랙터입니다. 과거에 농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북한 농민들 돋기 운동 차원에서 보내려고 성금을 모아서 만든 거고요.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 20대를 썼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30여 대는 현재 농민들이 쓰고 있는 트랙터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팩트다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 뭐 반국가 세력이 랄까 이런 오명은 잘못된 얘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농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성금을 모아서 만든 트랙터인데 남북관계 때문에 20여 대가 못 가고 있어서 보관된 트랙터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관님, 거부권을 행사한 경위인데 사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한테 와서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원택 위원** 그 안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 제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논의가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대표

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듣다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도 있지 않습니까?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정확히 들으세요. 우리가 국민의 대표고 국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관님께서나 장관이 필요하면 얘기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떠나서 진실되게 얘기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려면 가지고 와야지요. 제시를 해야지요.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은 이렇게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와야지 그걸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진실된 검토입니까, 조건부 검토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실상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건. 여기는 논의 주체가 아닙니까? 농업의 주요 정책과 입법을 논의하는 주체들입니다, 여기가. 여야정 협의체는 하나의 그릇이지 실질적 논의는 여기서 해야 돼요. 아무리 거기에서 얘기를 해도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날도 장관님이랑 차관님이랑 전향적 안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안이든 농식품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이 곧 정부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안을 내려면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권한대행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확정을 짓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그쪽에서도 그렇고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부안을 빨리 확정을 짓자 그런 얘기를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장관이나 차관께서는 상황을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쌀값은 쌀값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 20만 원 이상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 쌀값은 쌀값대로 무너진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제가, 전임 장관께서 ‘걱정하지 마라. 제도 안 만들어도 좋다. 우리는 능력 있다. 충분히 20만 원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거꾸로 그때 당시 저를 설득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화해야 된다는 취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서 과연 시장경제 원리에 뭘 보완해야 할지 이런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제출한 안은 한마디로 국가 폭망법이고 농망법으로 주장은 하면서 매도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 다른 외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랬던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꾸로, 수용하고 그러면 준비기 1년 동안 서로 협의된 안을, 합의된 안을, 합의되면 그러면 재개정해서 그걸로 시행하자고 거꾸로 제안도 했었잖아요. 제가 장관께 제안했거든요, 그것 검토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2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가격을 20만 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면적을 먼저 줄이고 직불제나 수입안정보험을 통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산비는……

○**이원택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차관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직불제나 수입안정보험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앞뒤가, 완전히 논리가 바뀐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글쎄요, 저희들은 일단은 면적을 줄여서 빨리 가격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 주되 그게 면적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격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만 원이 안 되는 것은 시장의 어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가격을 정해서 어디까지 하자 그런 것보다는 수입이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게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선제적 수급 조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적어도 쌀 가격을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서 끌어올리자라는 거였잖아요. 그 기능이 완전히 폭망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선제적 수급 조절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면적을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음에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드렸던 생산비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80kg 한 가마당 12만 8248원입니다. 경영비가 8만 4743원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우리 농식품부 농정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현재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농정관으로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전임 장관이 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게 가루쌀이었어요. 가루쌀 제도 도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요술 방망이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

고 있고요. 또 양곡관리법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예타도 안 거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 내세워 놓고 그게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농식품부의 농정관, 사람을 다 바꾸든지 아니면 조직 자체를 없애든지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현재의 농정은 회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번 재의요구 할 때 농식품부에서 재의요구서 제출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 내용 보면 스스로 무능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써 놓고 있어요, 그 내용에. 지금 채소가격안정제나 재해보험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요, 작목별로 중요한 것. 그러면 그 품목들은 쏠림 현상이 왜 안 생깁니까? 뭐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 대답 뻔한 얘기여서.

어차피 지원대책을 하면 그걸 조장해서 키워 내려고 지원하는 거고 또 추가적인 쏠림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어책도 마련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이지요. 그걸 가지고 지원대책이 있으니 쏠림 현상이 있고 쏠림 현상이 발생하니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품목도 아니고 다품종의 여러 가지 우리가 진작해야 될 전략작물까지 포함해서 이걸 쏠림 현상으로 매도를 해요.

또 이해관계의 조정을 해서 갈등이나 불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기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대표들을 모아서 구성원으로 만들고 거기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요. 그것조차를 갈등과 불신의 원흉인 것처럼 적시를 했어요. 저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던 기본 취지를 전부 부정하더라.

또 재해보험법을…… 그게 목적입니까? 재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해대책법을 만들고 재해보험법도 하나의 수단인데 재해대책법을 강화하면 재해보험법이 형해화된다…… 우리가 재해보험법을 필두로 합니까, 기본 안전망을 할 때는 재해대책법이 기본이 되어야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표 이념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명백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편하합니다.

그리고 재생의, 실제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그대로 생산비로 보전하는 것인 양 기록해 놓고 그걸 그대로 매도했어요.

또 우리 품목별 보험료 책정할 때요 품목별로 재해위험도가 달라서 보험료가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품목별 재해위험도가 동일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써 놨어요, 재해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 민간보험하고 정책보험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재해위험도에 따라서 품목별로 다 재해보험료가 다르지요. 같은 것인 양 매도했고, 또 스스로 농업인들의 피해 경감도 여부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것 못 합니다, 집행을. 뭐 하게 재해보험법 운영합니까?

이후에 청문회가 있을 때 구체적인 내용 적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만들어 놓은 대책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 얼마만큼 무모하게 제도를 펼쳤는지,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농식품부의 현재 인사들은 농정을 이끌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능하고 잘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반성하고 받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이 저희 정부, 지금 제가 차관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해 온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여러 기간 동안 거쳐서 죽 해 왔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조금씩 발전된 것도 있고 또 그게 유지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했던 것이 전혀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뭐가 아쉬워,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약속해 놓고 못 했잖아요.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오늘 5시에 의총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앞으로 두 분만 더 질의받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것 큰일 났네,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총 해야 되는데?

그러면 5분 딱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차관님, 저희 음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끔 현장 점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거부권 행사된 재해대책법 보시면, 아마 현장에서 화훼농가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그 안에 몇 년 재배한 화분들이 수억 원어치씩 다 들어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방시설이 고장남으로써 그냥 단순히 하우스 붕괴가 아니라 난방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서 고스란히 몇억씩 손실이 난 거고, 현장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보험상품으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분화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해대책법에 그렇게 보험 미출시 상품이라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담았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현장에서 받으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대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재해보험에 있는 품목 그다음에 보험이 안 되는 품목하고 좀 차등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임호선 위원** 거기서 수억 원씩……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 현장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거부권 행사된 데 대해서 상당히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도 차관님은 좀 너그럽고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대안 중의 하나로 수입안정보험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쌀을 집어넣은 게 면피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내년 초에 논의가 될 걸로 계속, 내년 봄에 논의가 될 거지요? 그러면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작동 기제 자체가, 여기 보험 적용이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60~85% 이하로 하락 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품목은 여기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쌀의 경우에는 60~8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얼마에서 얼마, 예를 들어 20만 원 기준에서 이 수입안정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그러면 60~85%가 떨어지는 가격이 얼마였을 때 수입안정보험에 작동되면, 여기 기대수입형 뭐 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 있지 않습니까? 이 유형별로 얼마씩 보상이 가능한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다른, 예를 들어서 단감이나 가을무나 배추나 복숭아 이런 경우에는 가격의 등락 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 수입안정보험에 어느 정도 기능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쌀의 경우에는 60~85%라고 하는 이 작동 기제 자체가 저는 작동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작성하여 가지고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존경하는 박범수 차관님, 나는 농림부에 박범수 차관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서삼석 위원** 쌀 문제, 거부권 문제는 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소회를 한번 들어 보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관은 안보라는 낱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안보라는 것, 갑자기 물으셔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쪽하고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위험의 시기에도 최소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베티목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서삼석 위원** 한자 해석 그대로예요, 편안할 안(安) 자 보장할 보(保) 자예요. 국방안보하고 식량안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분야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데 이 정부는 접근하는 방식이나 인식하는 사고가 전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국방안보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는 병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공급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소정의 봉급도 줍니다. 농민들에게는 그런 게 되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삼석 위원** 그러면 안보라는 말을 안 써야지요. 식량안보라는 말을 정부도 안 써야지요, 농림부도 안 써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유사시에 식량안보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하여튼 마지막에 답변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돼.

상식적으로 나는 수염이 대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전쟁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그 기본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식량이에요. 분단된 국가에서 국방·안보 못지않게 식량안보라는 개념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그 충실해야 할 개념의 주체인 농림부가 너무 이렇게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재정당국, 최고 통치권자는 놔두고라도. 그렇게 접근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재정당국이나 최고 통치권자를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런데 국방의 경우에는 완전히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100% 공공재인 것이고, 쌀이나 이런 식량의 경우에는 시장재이면서 시장 실패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 일부는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서삼석 위원** ‘시장, 시장’ 하지 말고 이 정부를 보세요. 개입 안 해야 할 때는 쓸데없이 개입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난리를 피우면서 여기서 그런 시장 논리를 펴면 안 되지.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명한 판단을 갖고 있는 우리 박범수 차관은 그동안 장관한테 가려져서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기회를 드렸는데 역시 우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답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가 전에 회의 때 우리 차관께 뭘 부탁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기억이……

○**서삼석 위원** 무슨 갑자기예요, 이 앞전 회의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겨울의 대표 작물인 신안 시금치 작황에 대해서 그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지금 검토를 시켰고요. 재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거 가지고 사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해가 논에다 심은 시금치만 있는 거냐 그것 가지고 논란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해 넘기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곧 나올 겁니다.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농민들에게 농업에 꼭 필요 한 민생 4법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해가 일상화돼 있는 지금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재해 입법, 농업재해 입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배 일소피해, 사과 일소피해, 농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심각하다고는 알았는데 사과의 경우는 실제 정파가 20%밖에 안 된대요, 배는 한 40% 수준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소 피해의 성격이 이미 따고 나서 저온저장고로 들어가고 나면 그때 피해가 발생되는, 제가 차관님하고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오신 농민들도 이 농사를 어떻게 계속 짓겠냐, 못 짓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거의 좀 많이 포기하신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아서 너무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농민들이 요구하셨던 것이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제주 레드향이었지요? 레드향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벼멸구 인정 할 때, 농업재해로 인정할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피해 본 농민들이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배나 사과 이 피해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에 대해서는 좀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재해로 인정하려고 하면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 행정을 펼치시면.

그리고 피해도 입증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입증도 예를 들자면 전년도 생산량 대비 몇 프로 떨어졌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근거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당장 피해 본 농민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보험 약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보험 제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보험 법이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전 생산비 투입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손실률, 농업 부분은 제외하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거부권을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농림부가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피해 본 농민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농민들 이야기도 들으시고 하셔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지금 추진된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일소피해의 경우에 사과의 경우에 나무에 달려 있는 단계에서 일소피해를 입어 가지고 피해가 난 경우에는 재해로써 인정이 되고……

○**전종덕 위원** 예, 그건 아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거기도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배의 경우에 따 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재해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저희도 재해로 인정을 쉽게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런 점입니다. 어떤 농가 거는 같이 똑같이 따 가지고 넣었는데 똑같은 품종의 똑같은 연생의 나무를 따서 넣었는데 그거는 피해가 안 나고, 어떤 거는 또 나고 이런 차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재해로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이런 피해가 한번이라도 있었으면 저희들이 뭘가 좀 증거를 가지고라도 입증을 해 보겠는데 올해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했던 겁니다.

○**전종덕 위원** 재해는 다 처음이지요, 농업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를 어떤 지자체는 지자체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전종덕 위원** 아니요. 차관님, 그 이야기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진주인가 한 군데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진주도 했고요. 충남 쪽에서 일부 했다고 들었고요.

○**전종덕 위원** 나주도 안 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나주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전종덕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때 다 지원하셨다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나주하고 협의를 할 건데 지금이라도 지자체에서 일부를 해 주면 그 돈만큼 나가니까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겠다. 뭐 올해야 예산이 없겠지만 내년 초가 다 되니까 내년 초에라도 그런 걸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겠다, 아까 시금치의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 그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의 경우에도 그래서 올해 사고가 그런 게 났고 그러니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더 검토를 하라고 지금 검토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현장에도 좀 가 보시고 농민들 이야기도 한번 귀담아듣고 해서 대책

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시에 의총이 있기 때문에요.

○전종덕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다음에 저희 공청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현안질의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힘당을 여당으로 생각하세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거는 뭐 법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저는 당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도 신경 안 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철현 위원 ‘여당’이란 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당정협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당정협의’하고 ‘여당’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지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분은 국힘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국힘당 소속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정부안에서 협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사실상 지금 대통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주철현 위원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데, 그런데 이 국힘당을 여당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정 협의하는 것도.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농업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갈지 오래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게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큰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행 체제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관련 법은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타성적으로 그대로 그냥 같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는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그런 철학을 유지해 오던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중립적인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좀 판단이 틀렸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차관님 생각도 똑같았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는 같은 생각입니다.

○주철현 위원 이게 농어업재해보험법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시행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하고 맞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제가 알기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관련돼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연적 재해 같은 것으로 계속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가중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 법이 맞는 방향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게 일반적인 보험의 원칙입니다. 사실은 보험
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주철현 위원** 아니, 우리가 자동차보험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건 본인이 하여튼 간에
사고를 냈을 때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업재해였는데, 그게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인데 어떻게
그것을 농민 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자동차보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박을 맞아 가지
고 자기 책임은 아닌데 맞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보험료를 할증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한테만
예를 들어서 몇천 퍼센트의 보험료를 할증을 해야 될 거고 그 사람은 보험 가입을 안 하
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래서 그런 걸 좀 최소화하면서 하는 대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철현 위원** 만약에 양곡관리법이 개정안대로 시행이 되면 1년에 추가 부담, 재정 부
담이 얼마나 소요가 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조 정도가 더 듦다고 지금 여기 나
와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농안법은 얼마나 들어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조 정도가 더 드는 걸로, 농안법 1조 2000.

○**이원택 위원** 말 정확히 하셔야 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주철현 위원** 1조 2000쯤 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이나 대책법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거는 지금 재정추계가 안 돼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보험법 원리만 갖고 이야기하게 되
면 농민들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부 지원 자체가 다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해법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자
세로,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힘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하고도 터놓고 정책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좋습니다.

○**주철현 위원**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대신에 저희가 정부안에서 조금 의견을 정리한 다음
에 그게 되는 대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저희는 어차피 법안을 또 추가로,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타협안을 이끌어 낼 수 있게…… 어디 100% 정부 입장만 고집하게 되면 되
겠어요? 타협을 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주철현 위원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돼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하여튼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범수 농림식품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청가 위원(1인)

송옥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산림청

청장 임상섭

【보고사항】

○의안 회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3)

이상 2건 12월 11일 회부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5)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4)

농림어업회의소법안

(2024. 12. 12.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5)

이상 12건 12월 13일 회부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6.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이상 3건 12월 17일 회부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이상 4건 12월 18일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6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6)

이상 5건 12월 19일 회부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8)

이상 2건 12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5)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2.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3)

이상 2건 12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2024. 12. 13.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7)

이상 2건 12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12.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4)

1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